

2019.09.20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 사항' 안내

I.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개정 사유

-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

-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구분
-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

나. 가의 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개정

-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 적용
- 다만, ①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②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

2019.09.20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 사항' 안내

II. 주요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신설)	나 지역
포괄허가	사용자 포괄	원칙적 허용	예외적 허용 ¹⁾	예외적 허용
	품목포괄	AA, AAA 등급 허용	AAA 등급만 허용	AAA 등급만 허용
	재수출	가능	불허	불허
	신청서류	1종 (신청서)	3종	3종
	유효기간	3년	2년	2년
개별허가	신청서류	3종	5종	7종
	심사기간	5일	15일	15일
	재수출중계수출	심사면제	별도심사	별도심사
중개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별도심사
상황허가	허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1)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등

* 개별허가 시 신청서류

(가의1 지역: 총 3종)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가의2 지역: 총 5종) [가의1 지역 서류 (3종)] +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나 지역: 총 7종) [가의2 지역 서류 (5종)] + 수출계약서, 수출자 서약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문 및 신규대조표』 : “붙임”

◇ 시행일자 : 2019년 09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제14호 본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각각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6 참조)

별표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19 참조)

부 칙 <제2019-154,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⑦ (생략)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3. (생략)

⑨ (생략)

<신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가의1 지역-----

-----.

2.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

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생략)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의1 지역-----

-----.

14. -----
----- 가의1 지역-----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
역에 속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
월 27일까지로 한다.

-----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

②·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제10조 관련)

1.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지역명	해당국가
가.	가의1 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가의2 지역	일본
나.	나 지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셜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튀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르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야,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와,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리),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가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2.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본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등급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의1 지역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	-	서류면제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매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수출자의 최대주주	허가 면제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2.수출자의 해외 본점			
	가의1 지역	3.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 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 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서류 면제*	서류 면제	심사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4.수출자의 해외 지점 (단 수출자가 본점)			
	가의2 지역, 나 지역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 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인 경우	허가 면제	허가 면제	허가 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	10일	5일	
*소관체제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표시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	○	○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관측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 면제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	-	○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간·초민감 기술을 '가의1' 지역에 건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면제.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	-	○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의1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가의2 지역, 나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X	△ '가의1' 지역만	○	
중개 허가	정기보고 주기	실적보고	반기	연간	
		운영보고	연간	연간	
	허가면제	X	○	○	
		실적보고	-	반기	반기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 민간·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수출허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